

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문서번호 TWP-C111 제정일자 2014. 11. 20. 개정일자 2018. 02. 19. 개정번호 3 페이지 1/5

목 차

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장 위원회 제4장 보칙 부칙

작성부서	NCS지원센터	제정일자	2014. 11. 20.

구 분	검 토				승 인	
직 책	NCS지원센터장	기획처장	교무처장	학생취업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문서번호 TWP-C111 제정일자 2014. 11. 20. 개정일자 2018. 02. 19. 개정번호 3 페이지 2/5

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개정이력			
개정 번호	개정일자 개정내용		
1	2016. 01. 11.	- NCS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- NCS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-> 교무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- 규정 문구 재정립	
2	2017. 03. 29.	-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면 개정 -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·평가 업무 추가 - NCS 기반 교육품질개선(CQI) 업무 추가 - NCS 직무능력 인증서, 직업기초능력 인증서 별지 서식 추가 - NCS 지원센터 운영규정 문구 재정립	
3	2018. 02. 19.	-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	



문서번호TWP-C111제정일자2014. 11. 20.개정일자2018. 02. 19.개정번호 3 페이지3/5

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에 따라 동원대학교에 설치하는 NCS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과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수요자(산업체 및 재학생, 졸업생)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(이하 "NCS"라 한다.)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7.03.29.>

- 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업무<개정 2017.03.29.>
- 1.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2. 교육과정 외부 전문가 평가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②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업무<개정 2017.03.29.>
- 1. NCS 기반 교수학습지침서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3.29.>
- 2. NCS 기반 교수학습운영평가서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3. 향상·심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4. NCS 전담교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3.29.>
- 5. NCS 관련 교육 및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3.29.>
- 6. 실험·실습 기자재 자문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3.29.>
- 7. NCS 홍보·전파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8. NCS 직무능력 인증서[별지 제1호 서식], 직업기초능력 인증서[별지 제2호 서식] 발급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③ NCS 기반 교육품질개선(CQI) 업무<신설 2017.03.29.>
- 1. 교육품질개선(CQI) 영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2. 교과목 교육품질개선(CQI)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3. 학과 교육품질개선(CQI)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4. 대학 교육품질개선(CQI)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④ NCS 교육관리시스템 업무<신설 2017.03.29.>
- 1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2.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3. NCS 기반 교육품질개선(CQI) 환류 지원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⑤ 기타 NCS 업무<개정 2017.03.29.>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

문서번호 TWP-C111 제정일자 2014. 11. 20. 개정일자 2018. 02. 19. 개정번호 3 페이지 4/5

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4조(조직)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센터 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.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
② 이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원과 계약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진행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3장 위원회

제5조(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위원회) 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
- 1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2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② 위원회는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 NCS 전 담교원을 두고 NCS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.<개정 2017.03.29.>
- ③ 센터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위원회) 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 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
- 1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2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평가 방법 및 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3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4.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5. NCS 기반 교육품질개선(CQI)에 관한 사항<신설 2017.03.29.>
- ② 위원은 센터장과 전임교원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추천 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02.18., 2017.03.29.>
-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) ① NCS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"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- 2.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- 3. 기타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
문서번호 TWP-C111 제정일자 2014. 11. 20. 개정일자 2018. 02. 19. 개정번호 3 페이지 5/5

NCS지원센터 운영규정

- 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[전문신설 2018.02.19.]

제8조(회의)

- 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보 칙

제9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별 첨

[별지 제1호 서식] NCS 직무능력 인증서

[별지 제2호 서식] 직업기초능력 인증서

NCS 직무능력 인증서

전공:학번:성명:

위 학생은 동원대학교 "직무수행능력"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직무를 이수하였기에 이를 인증합니다.

◎ 핵심직무 :

능력단위코드	능력단위명	능력단위코드	능력단위명
	755		
	1/5		
	MAN		

20 년 월 일

동원대학교총장 🔾 🔾

직업기초능력 인증서

소 속:

학 번:

성 명:

91 CH

위 학생은 동원대학교 "직업기초능력"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았기에 이를 인증합니다.

영역	의사소통능력	자원관리능력	조직이해능력	수리능력	자기개발능력
다 다 의	0			N F	
영역	기술능력	대인관계능력	직업윤리	문제해결능력	정보능력
기 교 비		94		2°-	

20 년 월 일

ON UNIN

동원대학교총장 🔾 🔾